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64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홍기원의원안)	2

I. 개요

1.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64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3. 4.

(3) 회 부 일 : 2025. 3.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홍기원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 대상: 내국인이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받은 피해보상금 *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621)」,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 ○ 특례내용: 익금 불산입 ○ 적용기한: 없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홍기원의원안 2025. 3. 4. 발의(의안번호 8643)

□ 개정안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621)」의 의결을 전제로 내국인이 해당 법률에 따라 받은 피해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남북경제협력은 1988년 7월 7일 우리 정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¹⁾과 같은 해 10월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지침」을 계기로 시작되어 상품교역과 위탁가공교역 외에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북협력사업 및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됨.

1) 1988년 7월7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발표하고, 1988년 10월 남북 경제개방 조치를 시행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잠정 중단되었고,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조치²⁾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체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이 중단되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서 2016년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³⁾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⁴⁾.

□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8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기업 등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함⁵⁾.

2)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폭침(2010.3.26.)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 5.24조치의 주요내용

- ①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 금강산지구 제외) 및 접촉 제한
- ② 남북교역 중단
- ③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 ④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지원 유지)
- ⑤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

3)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광명성호 발사 사건(2016년 2월 7일)으로 거듭되는 무력도발에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체류인원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실,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190) 검토보고서”, 2023. 4.

5)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전면중단 및 5·24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이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상금)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금 (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세 면제)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에 본 개정안은 피해기업 등이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도입한 바 있음⁶⁾.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보상금의 지급기준, 피해보상금의 규모 등이 구체화된 이후에 과세특례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였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으므로⁷⁾ 동일한 사유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중복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54

7)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개성공단 폐쇄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부의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보아 감액 가능(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78, 2018.1.29.)